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동산인도 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, 위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 능할 때에는 금 8,000,000원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○○. ○. ○.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7,000,000원의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20○○. ○. ○.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 그리고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현재 시가가 금 8,000,000원 상당입니다.
- 2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경개계약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



도를 청구하고, 아울러 그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행불능을 이유 5 형 가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약정서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

# 목 록

물 건 명 : 면직기

수 량: 3대

제작회사 : ○○정밀

소 재 지 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. 끝.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.kg
제출부수	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,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조제1항, 제2항)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채권성립 당시 위 동산이 있었던 장소)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

